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예산안 심사 제도 개편 등〉
■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869호·제2201870호)

2024. 8.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II.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4
III. 검토의견	6
1. 개정안의 개관	6
가. 제안 배경	6
나. 주요 내용	7
2. 국회의 예산안 심사 제도 개편 관련 논의 경과	11
3. 조문별 검토	14
가. 「국회법 개정안」 관련	15
1)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14
2) 다음연도 재정규모 등 국회보고 및 재정총량심사	19
3) 3단계 하향식 예산안 심사방식 도입	25
4) 결산 심사 결과의 예산안 편성·심사 반영	33
5) 예산 관련 법률안의 재정총량 내 처리	35

나.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 관련	37
1) 국회예산정책처 직무에 중복사업분석 추가	37
2) 국회예산정책처 직무에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 작성 추가	39
다. 부 칙	40

I.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맹성규 · 박희승 · 박균택 · 김현정 · 이훈기 · 임오경
박홍배 · 강유정 · 김윤덕 · 황정아 의원(10인)

나. 발 의 일 : 2024. 7. 17.

다. 회 부 일 : 2024. 7. 18.

※ 의안번호 : 1869

2. 제안이유

예산 편성 · 심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다부처에 걸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조정 · 조율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그대로 혹은 증액편성될 뿐만 아니라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8,800여개에 이르는 지출사업이 세세히 심의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 한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데서 비롯되는 연속성과 전문성의 부족 문제, 심사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실상 국회의 역할이 제한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대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실화 개선방안을 제안함.

심의과정상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 불가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심사·조정하고, 상임위원회가 위원회별 지출한도 내 심사한 것을 예산결산위원회가 종합하여 심사·조정하는 3단계의 예산심의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함.

재정총량 및 지출한도 심사과정은 기획재정부가 재정총량과 지출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등을 심사하여 재정총량심사보고서를 정부로 이송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건과 국회의 재정총량심사보고서가 함께 논의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그 소관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심사,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관한 사항, 감사원의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8호 신설).

나.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30명으로 하고, 다른 상임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함(안 제38조 및 제39조).

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등에 관해 재정총량심사를 하고 국회의 재정총량심사결과가 정부안건과 함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되도록 하는 국회 재정총량심사제도를 도입

함(안 제83조의3 신설).

라. 지출한도 내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 재량을 부여하되 지출한도를 초과한 경우 예산결산위원회가 종합·조정하도록 함(안 제84조제2항 및 제6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맹성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8호),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맹성규 · 박희승 · 박균택 · 김현정 · 이훈기 · 임오경
박홍배 · 강유정 · 김윤덕 · 황정아 의원(10인)

나. 발 의 일 : 2022. 7. 17.

다. 회 부 일 : 2022. 7. 18.

※ 의안번호 : 187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부처에 걸친 국가예산사업은 유사·중복 문제가 있음에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함.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조정·조율되지 못하는 실정임.

단적인 사례로, 저출생고령화 해결을 위해 5년간(2016~2020) 24개 부처 135개 사업에 230조원이 투입됐으나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조정을 위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운영중이나 정책결정이나 예산편성권한 없이 자문·심의 역할만 수행해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그 밖에도 인재양성사업, 청년귀농귀촌예산 등 다부처에 걸쳐 유사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중임에도 효과적으로 종합·조정할 시스템이 부재함. 예산 낭비를 막고 국가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복사업을 효과

적으로 조정할 방안 마련이 시급함.

미국에서는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매년 기관·부처간 중복사업을 찾아내 조정하는 중복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4,290억달러(한화 543조원)를 절약한 성과가 있음.

이에 국내에 중복보고서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국회예산정책처가 기관·부처간 중복사업에 대해 분석하고 효율적 조정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예산심사에 활용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중복사업들이 점증주의 예산편성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영기준예산제도는 5년 단위로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점증주의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아 한정된 국가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것임. 원점에서 사업효과성을 검토하는 것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수행하게 하고 이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맹성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¹⁾

1. 개정안의 개관

가. 제안 배경

헌법은 정부에 예산안 편성권을, 국회에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각각 부여²⁾하여 재정권한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안 편성 관련 정보의 비대칭³⁾ 및 예산안 편성·심의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예산안 심의·확정이라는 국회 본연의 재정통제 기능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음.

특히,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설정한 재정총량이나 각 분야별 전략적인 재원배분에 관한 정보를 국회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워 이에 사실상 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회는 촉박한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세 부사업 위주의 미시적 심사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또한, 예결특위가 임기 1년의 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예결위원들이 타 상임위원을 겸임하고 있어 전문성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산안 심사가 한정된 기간에만 진행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이

1) 동 보고서에서 약칭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음.

용어	약칭
의안번호 제2201869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개정안」
의안번호 제2201870호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현행)	예결특위
예산결산위원회(개정안)	예결위

2) 「대한민국헌법」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3) 예를 들어 「국가재정법」은 예산안편성지침의 사후보고(제30조)나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전 소관 상임위원회 방향 보고(제73조제9항) 외에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보고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특정 기간에만 수행되는 문제 등도 지적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예산안 편성·심의 제도” 전반을 개편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맹성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예결특위를 상설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로 전환함.

둘째,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에 국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구체적으로,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다음연도 재정규모,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및 기금별 지출한도를 예결위에 보고하고, ② 예결위는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포함한 재정총량심사를 실시하며, ③ 국회는 의결한 재정총량심사결과를 정부로 송부하여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⁴⁾에서 정부안과 함께 논의하도록 함.

4)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부의 재정운용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재정부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음.

일 자	주요 내용
2020. 5. 25.	위기극복과 경제도약을 위한 중기 재정운용방향 논의
2021. 5. 27.	완전한 경제회복, 든든한 국가재정을 위한 중기재정운용 논의
2022. 7. 7.	새정부 국정과제 뒷받침을 위한 국가재정운용전략 논의
2023. 6. 28.	건전재정기조 유지, 국가 본질 기능·미래대비 투자 강화를 위한 논의
2024. 5. 17.	알뜰한 나라살림, 따뜻한 민생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논의

셋째,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현행 2단계 상향식 심사(Bottom-up;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예결특위 종합심사)를 3단계 하향식 심사(Top-down; 예결위 재정총량심사-상임위원회 예비심사-예결위 종합·조정)로 변경함.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① 우선 예결위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 한도를 포함한 재정총량심사를 실시하고, ② 이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는 재정총량심사결과를 준수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③ 예결위는 상임위원회에서 재정총량심사결과를 준수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면서 상임위원회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를 재정총량심사 설정 한도 내로 조정하는 것임.

넷째, 국회의 결산 심사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의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함.

이 외에도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재정 관련 법안이나 상당한 규모의 예산상·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가 예결위에서 설정한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한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에 중복사업에 대한 분석 및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 작성을 추가함.

[표-1] 국회법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심사주체 내실화	○ 상설특별위원회인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로 전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위원회”)	「국회법 개정안」
예산안 편성	○ 사전예산제도 도입 - 기획재정부 재정규모 등 예결위 보고 → 국회 재정총	「국회법 개정안」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량심사 및 정부 송부 →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총량심사결과를 정부안과 함께 논의					
예산안 심사	○ 2단계 상향식 심사 → 3단계 하향식 심사 <table><tr><th>현행</th><th>개정</th></tr><tr><td>①상임위 예비심사 ↓ ②예결특위 심사</td><td>①재정총량심사 :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 ②상임위 예비심사 : 위원회별 지출한도 내 ↓ ③예결위 종합심사 : 상임위 예비심사 종합 및 상임위 지출한도 미준수 조정</td></tr></table>	현행	개정	①상임위 예비심사 ↓ ②예결특위 심사	①재정총량심사 :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 ②상임위 예비심사 : 위원회별 지출한도 내 ↓ ③예결위 종합심사 : 상임위 예비심사 종합 및 상임위 지출한도 미준수 조정	「국회법 개정안」
	현행	개정				
①상임위 예비심사 ↓ ②예결특위 심사	①재정총량심사 :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 ②상임위 예비심사 : 위원회별 지출한도 내 ↓ ③예결위 종합심사 : 상임위 예비심사 종합 및 상임위 지출한도 미준수 조정					
결산 심사	○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의 시 반영	「국회법 개정안」				
기타	○ 예산 관련 법률안은 예결위 재정총량심사결과에 따른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한도 내 처리	「국회법 개정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에 중복사업에 대한 분석과 조정방안 제시,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 작성 추가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				

참고로, 「국회법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868호)과 상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총량심사결과보고서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②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타당성을 5년마다 원점에서 검토하며(영기준예산제도 도입) 예산안편성지침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 내용을 반영하고, ③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를 정부 예산편성에 반영하며,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기사업계획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임.

이들 개정안의 내용을 종합할 때, 신설·변경되는 예산안 편성·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1] 개정안에 따른 예산편성·심의 절차

예산안 편성	중앙관서의 장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1월 31일까지
	기재부 재정규모, 지출한도 등 국회 보고 및 ①예결위 재정총량심사 후 본회의 의결 거쳐 그 결과 정부 이송	
	(예정처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를 반영한)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통보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 예산요구서 기재부 제출	5월 31일까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총량심사결과 및 정부안 논의 ^{주2)}	
	(재정총량심사결과보고서를 반영한)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예산안 심사	②상임위 지출한도 내 예비심사	
	③예결위 종합심사(지출한도 미준수 조정)	

※주1) :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신규변경 절차, :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른 신규변경 절차,

①·②·③ : 하향식 3단계 예산심사 절차

주2) 법안에 따른 국가재정전략회의의 개최 시기는 미정으로, 중앙관서의 장 예산요구서 제출 이전에 실시할 수도 있음

2. 국회의 예산안 심사 제도 개편 관련 논의 경과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심사의 투명성 확보,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 등 예산 및 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예산·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 바 있음.

동 위원회는 7차례의 전체회의 및 3차례의 간담회 결과를 종합한 결과보고서에서 예결특위의 상임위원회 전환을 건의하였음. 구체적으로, 동 위원회는 현행 예결특위가 ① 1년의 위원임기, 타 상임위원 겸임 등 특별위원회에 내재된 한계로 인하여 예·결산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② 재정총량 등 거시적 예산심사보다는 세부사업 단위의 미시적 예산심사에 치중함으로써 방대한 국가재정을 충실히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국회의 예·결산 심사권한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또한, 예결위원 임기(2년) 및 위원정수(30인), 타 상임위원 겸임 금지, 소관부처 및 법안심사권에 관한 개선안, 현행 2단계 상향식 심사방식의 3단계 하향식 심사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께 건의하였음.

[표-2] 「예산·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정책 건의 중 예결특위 상임위화 부분

가.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

예산·결산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한다.

나. 위원회 임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 타 상임위원 겸임 금지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은 타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라. 위원정수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정수는 30명으로 한다.

마. 소관부처 및 법안심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시 소관 부처 및 법안심사권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3가지 정책건의안을 참고한다.

(제1안) 예산결산위원회의 소관은 모든 부처의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이 경우 예산결산위원회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한 협의권을 갖는다.

(제2안) 예산결산위원회의 소관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과 현 기획재정부의 사무 중 예산·국고 및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안) 예산결산위원회는 세입·세출, 국고, 공공기관 관리 등 국가재정활동을 총괄하는 독립된 부처(가칭 국가재정부)를 그 소관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정부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현 기획재정부를 재정을 담당하는 국가재정부와 경제정책과 금융을 담당하는 경제금융부로 분리한다.

바. 상임위·예결위 간 심사방식

현행 2단계의 상향식 심사방식(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을 3단계의 하향식 심사방식(예산결산위원회의 총량심사 → 상임위원회의 심사 →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조정)으로 전환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국회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를 주제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실시하였고(2022. 9. 15.), 당시 주요 논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3] 국회 예산·결산 심의기능 강화에 관한 공청회 논의사항

구 분	주요 요지
사전예산제도 도입	○ 예산·재정 정보에 대한 국회와 정부간 정보 비대칭 문제, 국회의 거시적 예산 조정 기능 미흡 등 문제 극복을 위해 사전예산제도 도입 필요 ○ 사전예산제도가 정부에 구속력을 미칠 경우 헌법상 재정민주주의의 원칙, 정부 예산안 편성권을 위배할 소지가 있음
예결위 상임위 전환	○ 예·결산 심사 전문성 제고 및 재정규율·독립성 확보를 위해 상임위 전환 및 겸임 금지 등 필요 ○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 기준을 마련할 경우 소위 ‘상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
예산안 심사방식 전환	○ 예산안 편성(하향식)과 심사(상향식) 과정의 비정합성과 예결위·상임위 역할 중복 문제 극복을 위해 하향식 예산심사제도 도입 필요 ○ 하향식 예산안 심사방식을 채택할 경우 예결위와 상임위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전제될 필요

3. 조문별 검토

가. 「국회법 개정안」 관련

1)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안 제37조~제39조, 제41조 등)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예결특위 연혁

개정안은 ① 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면서 ② 그 소관을 (1)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2)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심사, (3)기획재정부의 예산에 관한 사항, (4)감사원의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의 소관을 함께 조정하는 한편, ③ 예결위의 위원 정수는 30인으로 하며, 예결위원은 타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표-4] 예결특위 상임위화 관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 ----- -----.
2. 법제사법위원회 가.·나. (생략) 다. <u>감사원</u>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결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u> <u>감사원</u> -----
4. 기획재정위원회 가. <u>기획재정부</u>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 가. <u>예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u> <u>기획재정부</u> -----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定數)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u>한다</u>.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u><단서 신설></u> 제41조(상임위원장) ① ~ ⑤ (생략) <u><신설></u>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 ⑥	<u>18. 예산결산위원회</u> <u>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u> <u>나.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심사</u> <u>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관한 사항</u> <u>라. 감사원의 결산에 관한 사항</u>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 ----- ----- -----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30명으로 한다.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 ----- 다만,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은 타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41조(상임위원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u> <u><삭제></u>

예결특위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전담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제2대 국회 「국회법」 개정(1953.1.22.)에 따라 일반 상임위원회인 예산결산위원회로 설립되었음.

이후 제5대 국회 「국회법」 개정(1963.11.26.)으로 예산안 및 결산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전환되었고, 매년 결산의 국회 제출시한인 9월 2일에 구성하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특별위원회 구성절차⁵⁾에 따라 구성되었음.

이후 제15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을 통해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되었음.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관련 규정인 「국회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⁶⁾ 적용이 배제되었으며, 위원정수는 기존과 같이 50인으로 하고, 위원 임기는 1년으로 정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⁷⁾.

(2) 검토의견

제15대 국회에서 예결특위가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의 위원 임기, 타 상임위원 겸임 등 특별위원회에 내재된 한계로 인하여 국회 예·결산 심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⁸⁾.

5)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해서 본회의 의결로 구성

6) 「국회법」 제44조(특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제86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7) 「국회법」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예산·재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2013. 9.). p. 25

개정안과 같이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면, 예결위원이 타 상임위를 겸임하지 않고⁹⁾ 2년간 예결위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예·결산 심사의 전문성이 제고¹⁰⁾되는 한편, 예결위가 연중 정부의 재정업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가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¹¹⁾.

[표-5] 개정안에 따른 변경사항

구분	현행	개정안
명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성격	상설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50인	30인
위원 임기	1년	2년
겸임 가능 여부	가능	불가

다만,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따라 의안 심사, 공청회·청문회 개최 등의 상임위원회 활동 범위와 국정감사 대상 기관 등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이 규율하는 예결위의 소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예결위 소관으로 예·결산심사와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관한 사항, 감사원의 결산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조직법」상 기획재정부의 사무¹²⁾ 중 재정정책이나 국고 등은 예산의 편성·집행 등과

9) 다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국회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및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기 때문에 예결위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국회법」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10)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과거 예산·재정개혁 특별위원회 공청회(2013. 5. 21.)에서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예결특위를 상임위화할 경우 타 상임위와의 관계 설정 및 역할 분담 문제가 발생하고, 타 상임위 겸임을 통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 심의에 임할 수 있어 타 상임위원 겸임 문제가 해소되어도 의원들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한 바 있음.

11) 강장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0, p.76

12) 「정부조직법」 제27조(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예결위 소관을 예산의 편성·집행에 한정할 것인지, 재정정책 등 예산과 연계된 사무까지 관장하도록 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¹³⁾

한편, 개정안의 체계·자구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 제37조제1항의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위의 소관을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이를 「정부조직법」상의 용어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¹⁴⁾.

둘째, 개정안은 제41조제6항을 신설하여 예결위원장 선거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결특위가 상임위원회로 전환되면 현행법 제41조제2항¹⁵⁾이 적용되므로 예결위원장 선거 방식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음.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국회규칙)」에서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¹⁶⁾을 고려할 때, 법체계상 예결위의 위원정수는 국회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음.

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감사원의 임무

「감사원법」 제20조(임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13) 참고로, 업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예결위가 재정정책 등 예산과 연계된 사무까지 관장하도록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두 위원회(기재위, 예결위)의 소관 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음.

14) 예컨대 개정안 제37조제1항제18호제다목을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관한 사항”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확히 하는 것임.

15) 「국회법」 제41조(상임위원장)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16) 예외적으로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국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위원 정수가 쉽게 변경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187).

2) 다음연도 재정규모 등 국회보고 및 재정총량심사(안 제83조의3)

(1) 개정안의 주요 내용¹⁷⁾

개정안은 예결위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다음연도 재정규모,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및 기금별 지출한도에 대해 보고받은 뒤,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포함한 재정총량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며, 이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과 함께 논의하도록 규정함.

[표-6] 다음연도 재정규모 등 국회보고 및 재정총량심사 관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3조의3(재정총량심사)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다음연도 재정규모,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및 기금별 지출한도에 대해 보고받은 뒤,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포함한 재정총량심사를 한다. ② 국회의장은 예산결산위원회가 보고한 제1항에 따른 국회의 재정총량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 ③ 정부로 이송된 국회의 재정총량심사결과는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과 함께 논의된다.

(2) 사전예산제도와 헌법상 예산안 편성권 및 심의·확정권과의 관계

사전예산제도(Pre-budget system)¹⁸⁾란 일반적으로 3~5년까지의 경

17) 「국회법」 개정안 제83조의3는 사전예산제도와 하향식 예산안 심사제도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으로, 이 중 하향식 예산안 심사방식과 관련된 사항은 “목차 나.”에서 후술함.

18) 사전예산제도의 개념은 각국의 도입 양태에 따라 그 정도를 달리하고 있어 일의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움. 다만, 사전예산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은 경제 및 재정에 대한 전망, 재정정책의 목표 대비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

제전망, 재정목표, 총 지출한도, 분야별 자원배분 등 중기재정계획을 담은 사전예산서를 본예산안의 심의에 앞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제도임¹⁹⁾.

1990년대 중반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은 스웨덴,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정부가 독점한 재정정보의 공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전반적인 재정전략과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논의 분리, 정부가 결정하기 어려운 재정전략과 목표에 대한 재정민주주의적 합의 근거를 의회에서 확보하기 위해 사전예산제도를 도입하였음²⁰⁾.

OECD 조사에 따르면 의회에서 사전예산 논의를 하는 국가가 2012년 3개국에서 2018년 13개국(OECD 회원국 의회의 1/3에 해당)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 절반 정도가 사전예산 논의 결과를 정부에 송부하는 등 사전예산 논의를 통해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조정 및 재정정책의 광범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경향을 보임²¹⁾.

개정안은 예산안 심의 이전에 국회가 본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서 사전예산제도의 일환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예산안 편성과정에 의회가 관여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예산안 편성권·심의권의 범위에 관한 논의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먼저, 헌법은 법안 제출권과는 달리 정부만이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

표, 경기변동이 재정변수에 미치는 영향, 예산규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임(김도승, 「사전예산(Pre-Budget) 도입 논의에 대한 공법적 검토」, 2011. 4.).

19) 박기영, 『한국재정』, 2018. p. 384

20) 박기영, 앞의 책, p.385

21)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에서 사전예산 논의를 하는 국가는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스페인,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임. 이 중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스웨덴은 사전예산 논의 결과를 정부에 송부함(OECD, 「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2019」, 2019. 5.).

도록 하고 예산안의 심의와 확정은 국회의 권한으로 두고 있으므로, 예산안 편성에 관한 권한은 전속적으로 정부에게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²²⁾. 이러한 측면에서 재정총량의 국회 의결은 정부의 예산안 마련에 관한 지침을 확정하는 것이기에 정부 예산안 편성의 재량권을 제약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²³⁾이 있음.

기획재정부 역시 예산안 편성이 확정되기 전에 예결위에서 재정총량 및 분야별 지출한도를 심사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임.

반면, 예산안 편성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을 위한 예산과정의 첫 단계이고 헌법은 예산안 확정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예산안 편성권이 정부의 독점적·배타적·무제한적 권한이 되어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국회의 관여를 배제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음²⁴⁾²⁵⁾.

이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제출하는 예산안으로 말미암아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사실상 제약을 받고 있다면 이는 예산안 편성권의 일탈 문제로, 정책결정권자로서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저해하지 않는 제도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함²⁶⁾. 이러한 측면에서 사전예산제도는 재정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 제고 방안이라 할 수 있음.

22) 강주영, 「정부 예산편성권의 공법적 함의」, 2016. 8.

23) 성시경, “예산 편성·심의 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2022. 5. 11.)” 발제문

24) 강주영, 「정부 예산편성권의 공법적 함의」, 2016. 8.

25) 아울러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입법부에 주어진 의회민주주의로부터 파생되는 행정부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수단인 점으로 미루어 본다면, 함묵적 해석상 예산에 대한 편성권이 행정부에 독점적으로 주어져 입법부에 대해서도 배타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권한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음(장선희, 「예산의 법적 성격」, 국가재정 관련 법제의 현안과 과제(Ⅰ), 한국법제연구원, 2004.).

26) 임인규, 「예산심의의 실질화를 위한 헌법정책적 연구」, 2008. 2.

또한, 개정안의 재정총량심사결과가 강제성을 지니지 않고 예산안 편성의 참고사항으로만 기능한다면 헌법상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음²⁷⁾).

(3) 검토의견

현행 「국가재정법」 제29조²⁸⁾는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안편성지침에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국회에 제출²⁹⁾되고 있어,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이전에는 국회는 해당연도 재정총량이나 분야·부처별 자원배분을 알 수 없음.

이에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결위에 다음연도 재정규모,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중앙관서별·기금별 지출한도를 보고하도록 하고,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포함한 재정총량심사를 하여 이를 본회의의결로 처리한 후 정부에 송부하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과 논의하도록 규율함.

27) 이와 관련하여 예산편성권이 정부의 배타적·독점적 권한이 아니므로 예산편성과정에 입법부의 관여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이 강제성을 갖게 된다면 이는 헌법상 정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의 침해가 될 것이므로 국회의 의견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임종훈, 「헌법 제54조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2010. 11.). 이에 비추어 생각할 때, 국회의 의견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임.

28)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9)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전에 국회가 재정총량심사를 할 경우 해당연도의 재정총량과 분야별 지출한도 설정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참여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사 기능이 내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국회의 심사결과를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에 참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부는 재정총량 및 분야별 지출한도 설정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예결위에서 재정총량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토록 하고 있는데, 재정총량심사결과를 본회의가 아닌 예결위에서 의결한 후 정부에 송부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본회의의 의결은 국회의 최종적인 의사이므로 예결위 의결보다는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본다면 앞서 설명한 예산안 편성권 침해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총량심사결과를 정부안과 함께 논의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마련하면서도 절차별로 이행해야 하는 시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재정총량심사결과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차질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의 예결위 보고 기한과 재정총량심사결과의 의결 기한을 법문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동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³⁰⁾은 예산안

30) 「국가재정법 개정안」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국회법」 제83조의3에 따른 국회의 재정총량심사보고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편성 시 국회의 재정총량심사보고서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의 예결위 보고부터 재정총량심사 결과를 정부에 송부하기까지 절차별 시한을 마련하여야 법 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임.

셋째,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 제83조의3제3항 중 “국가재정전략회의”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정부안”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재정전략회의는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³¹⁾로 해당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음. 개정안과 같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총량심사결과를 논의하도록 규정하려면, 개최시기, 논의안건 등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임.

또한, “정부안” 역시 법문언상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2021. 5. 26.

3) 3단계 하향식 예산안 심사방식 도입(안 제83조의3 및 제84조)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현행 2단계 상향식(Bottom-up) 예산안 심사 방식을 3단계 상향식(Top-down) 예산안 심사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① 예결위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심사하고, ②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상임위원회가 예결위가 설정한 위원회별 지출한도 내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③ 예결위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종합하고 각 상임위원회가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 한도 내로 조정함.

[표-7] 3단계 하향식 예산안 심사방식 관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83조의3(재정총량심사)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다음연도 재정규모,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및 기금별 지출한도에 대해 보고받은 뒤,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포함한 재정총량심사를 한다. ② 국회의장은 예산결산위원회가 보고한 제1항에 따른 국회의 재정총량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고, 국회는 본회의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 ③ 정부로 이송된 국회의 재정총량심사 결과는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

현행	개정안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서 정부안과 함께 논의된다.
<신설>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상임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83조의3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재정총량심사결과를 준수하여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야 한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예산결산위원회는-----결과가 재정총량심사에서 설정한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준수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하여야 하고, 각 상임위원회가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예산결산위원회가 재정총량심사 설정 한도 내로 조정하며-----예산결산위원회에-----

(2) 3단계 하향식 예산안 심사방식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3단계 하향식 예산안 심사방식이 도입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첫째,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의 국가재정 통제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예산안 심사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재정총량 및 전략적인 자원배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정부는 거시적 자원배분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세부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005년도 예산안 편성 시부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³²⁾를 도입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³³⁾.

특히,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고 있으나, 현재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 시 재정총량 및 향후 재정운용계획 등에 대한 논의보다는 예산안에 편성된 개별사업들에 대한 예산 조정 위주로 심사가 진행되면서 국회의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 예산 심의 기능이 미흡함.

개정안에 따르면 예결위에서 우선 재정총량과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결정하게 되므로, 국회에서도 재정총량과 전략적 자원배분에 대한 논의가

32)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중앙예산기관이 사전에 지출총액을 결정하고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한 다음, 그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제도로, 2004년(2005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기획예산처가 총액배분자율편성을 시행하였다고 함(박기영, 앞의 책, p. 402, 403).

33) 하종범, 「생산적인 국회의 예·결산심의를 위한 제도운영 개선방안」(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연구), 2016. 12.

진행되어 현행 예산안 심사방식의 단점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예결위와 상임위원회 간 역할이 보다 명확히 분담될 것으로 보임.

현재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 시 모두 개별사업을 미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 「국회법」은 예결위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³⁴⁾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구속력이 없어, 상임위가 예산안 예비심사 단계에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예결위 심사 시 사실상 이를 존중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현재의 예산안 심사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한편³⁵⁾,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 및 이해당사자와의 관계로 예산 증액에 집중하는 온정주의적 행태도 나타남³⁶⁾.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하향식 심사방식을 도입할 경우 지출한도 내

34)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35) 이에 대해 상임위 예비심사의 의의는 예결위 심사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예결위에서 상임위 심사 내용이 빈번히 수정되니 상임위 예비심사는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게 된다는 견해가 있음(하종범, 「국회의 예산결산심의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5. 8.).

36) 2020년~2024년 예산안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총지출 증액이 감액을 크게 상회함.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예비심사 결과		
		증액	감액	증감
2020	총 수 입	87,878	△276,605	△188,727
	총 지 출	13,673,609	△3,128,418	10,545,191
2021	총 수 입	492	△587,799	△587,307
	총 지 출	12,171,075	△906,607	11,264,468
2022	총 수 입	159	△1,311	△1,152
	총 지 출	13,484,185	△1,810,222	11,673,963
2023	총 수 입	600	△228,330	△227,730
	총 지 출	24,371,584	△1,796,126	22,575,458
2024	총 수 입	250,212	△336,486	△86,274
	총 지 출	17,018,227	△771,368	16,246,859

주) 정보위원회 제외

자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 심사백서(2024. 2.)

에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므로, 상임위원회의 예산 증액 관행이 개선될 수 있고,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가 예결위에서 존중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의 명확한 역할 구분을 통해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주요 검토 사항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첫째, 예결위가 재정총량심사를 완료하여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설정한 이후 경기침체, 재난 등의 사정변경으로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둘째, 예결위 종합심사의 범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예결위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재정총량심사에서 설정한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준수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하여야 하고”라고 규정하여 지출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 한도 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법」 제84조제5항 후단³⁷⁾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재정총량심사에서 설정한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준수한 경우에도 예결위가 그 세부내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예결위의

37)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본다.

종합심사를 상임위원회가 지출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할 수도 있으나, 상임위원회가 지출한도를 준수하였다고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사 내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산안의 최종 조정기관으로서 예결위의 역할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임.

셋째, 개정안과 예산안 자동부의제와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회법」 제85조의3³⁸⁾은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도입된 이후 예결특위는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처리하고 있음.

38)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 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치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8] 예산안 자동부의제 도입 이후 국회 예산안 처리 일자

구 분		예결위 상정일자	예결위 의결일자	본회의 의결일자	비 고
19대 국회	'15년 예산안	'14. 11. 6.	-	'14. 12. 2.	본회의 수정안 처리
	'16년 예산안	'15. 10. 28.	-	'15. 12. 3.	
20대 국회	'17년 예산안	'16. 10. 26.	-	'16. 12. 3.	
	'18년 예산안	'17. 11. 6.	-	'17. 12. 6.	
	'19년 예산안	'18. 11. 5.	-	'18. 12. 8.	
	'20년 예산안	'19. 10. 28.	-	'19. 12. 10.	
21대 국회	'21년 예산안	'20. 11. 4.	-	'20. 12. 2.	
	'22년 예산안	'21. 11. 5.	-	'21. 12. 3.	
	'23년 예산안	'22. 11. 7.	-	'22. 12. 24.	
	'24년 예산안	'23. 11. 3.	-	'23. 12. 21.	

이 경우 예산안 자동부의제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정부 예산안과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처리할 때에도 국회가 설정한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넷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재정총량심사결과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제84조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편성하는 것이고³⁹⁾, 개정안에서 제안하는 재정총량심사는 다음연도 본예산의 재정총량 등에

39)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법제적 측면에서 정보위원회의 경우 업무의 기밀성을 고려하여 예결특위에서 정보위원회의 예산안·결산 심사결과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는데⁴⁰⁾, 개정안과 같이 3단계 하향식 예산안 심사 방식으로 전환한 후에도 이러한 심사방식을 유지할 것이라면 제84조제4항의 인용조문에 같은 조 제3항을 추가⁴¹⁾하는 등 일부 체계·자구의 수정이 필요해 보임.

40)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④ 정보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41) 「국회법 개정안」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83조의3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재정총량심사결과를 준수하여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보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4) 결산 심사 결과의 예산안 심사 반영(안 제84조제3항)

개정안은 결산의 심사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9] 결산의 예산안 심사 반영 관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u>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u>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u>심사 결과</u>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③ ----- ----- <u>예산결산위원회에</u> ----- ----- <u>심사 결과</u> 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결산의 <u>심사 결과</u> ----- ----- ----- ----- ----- -----.

결산 심사는 재정집행 결과에 대해 사후적으로 국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인 동시에 그 심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심사에 반영하는 환류과정임을 고려할 때⁴²⁾, 개정안과 같이 명문으로 국회의 결산 심사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정기회 이전에 결산을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 제128조의2⁴³⁾

42) 김춘순,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2014. p. 606, 607

43) 「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그 처리 시한을 준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최근에는 통상 예결특위에서 8월 말에 결산 심의를 시작하여 연말에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결산 처리 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표-10] 최근 결산 심사 현황

구 분	결산보고서 제출일	예결위 결산 상정일	결산 의결일	
			예결위	본회의
2013 회계연도 결산	2014. 5. 30.	2014. 7. 15.	2014. 10. 2.	2014. 10. 2.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 5. 29.	2015. 8. 18.	2015. 9. 8.	2015. 9. 8.
2015 회계연도 결산	2016. 5. 31.	2016. 7. 12.	2016. 9. 1.	2016. 9. 2.
2016 회계연도 결산	2017. 5. 31.	2017. 8. 21.	2017. 12. 5.	2017. 12. 6.
2017 회계연도 결산	2018. 5. 31.	2018. 8. 21.	2018. 12. 7.	2018. 12. 8.
2018 회계연도 결산	2019. 5. 31.	2019. 8. 26.	2019. 10. 22.	2019. 10. 31.
2019 회계연도 결산	2020. 6. 1.	2020. 8. 24.	2020. 11. 12.	2020. 11. 19.
2020 회계연도 결산	2021. 5. 31.	2021. 9. 6.	2021. 12. 2.	2021. 12. 2.
2021 회계연도 결산	2022. 5. 31.	2022. 8. 29.	2022. 11. 7.	2022. 11. 10.
2022 회계연도 결산	2023. 5. 31.	2023. 8. 30.	2023. 12. 20.	2023. 12. 20.

5) 예산 관련 법률안의 재정총량 내 처리(안 제83조의2제1항)

현행법은 ‘기획재정부 소관인 재정 관련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상·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이하 ‘예산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는 미리 예결특위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개정안은 예산 관련 법률안을 예결위에서 설정한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한도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법률과 재정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표-11] 예산 관련 법률안의 재정총량 내 처리 관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3조의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① 기획재정부 소관인 재정 관련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는 미리 <u>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u>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3조의2(예산 관련 법률안의 심의) ① ----- ----- ----- ----- <u>예산결산위원회와의</u> ----- <u>하</u> 며, <u>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설정한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한도 내에서 처리되어야 한다.</u>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위원회별 재정총량 한도 내에서 위원회가 예산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이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법안비용추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법 제79조의2⁴⁴⁾는 예산 관련 법률안 발의 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법안 심사단계에서는 비용추계서가 크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총량과 위원회별 지출한도 내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하므로, 비용추계서가 법안 심사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임.

다만, 개정안이 효용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예산 관련 법률안의 범위에 대한 국회규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83조의2⁴⁵⁾ 재정제도를 변경하거나 예산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가 미리 예결특위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협의대상인 예산 관련 법률안의 범위를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이러한 협의 절차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⁴⁶⁾

국회규칙으로 예산 관련 법률안의 범위를 정하지 않을 경우 현행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가 지출한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 관련 법률안을 처리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⁴⁷⁾.

44)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5) 「국회법」 제83조의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① 기획재정부 소관인 재정 관련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46) 상임위원회가 예산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면서 예결특위와 협의를 진행한 사례는 없음.

47) 참고로 비용추계의 경우 그 제출 범위를 국회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국회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의안이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나.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 관련

1) 국회예산정책처 직무에 중복사업분석 추가(안 제3조제6호)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 제3조제6호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기관·부처 간 중복사업에 대한 분석과 효율적 조정방안 제시를 추가하려는 것임.

[표-12] 국회예산정책처 직무 관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 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u><신 설></u>	제3조(직무) ----- ----- ----- <u>6. 기관·부처 간 중복사업에 대한 분석과 효율적 조정방안 제시</u>

개정안은 의정활동지원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에 중복사업 분석을 추가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기관·부처 간 중복사업은 사업목적이나 성과 등이 유사한 사업을 다수 부처에서 수행하여 한정된 국가 예산의 낭비와 사업추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이를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중복사업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회예산정책처는 예·결산 분석보고서 등을 통해 중복사업 분석 업무를 일부 수행 중이며, 유사·중복사업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2023년도 예산안부터는 해당 내용을 모아 별도 목차로 작성하고 있음⁴⁸⁾. 이를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국회예산정책처 직무에 중복사업 분석 업무를 명시할 경우 해당 업무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개정안의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을 의미하는지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괄하는 유관기관⁴⁹⁾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8)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예산안 분석보고서 중 유사·중복 사업 분석 일부 발췌

구분	분석사업		비교사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신규 추진 재검토	과기부	디지털트윈경쟁력강화	과기부	지능정보서비스확산
중복 지원 배제 필요	법무부	배심제 관련 홍보비	대법원	국민참여재판제도 교육 홍보
통합 추진 필요	문체부	포스트 코로나 메가 로드쇼 개최	문체부	한국문화관광광대전

49)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의2(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 요청 대상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국회예산정책처 직무에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 작성 추가(안 제3조제7호)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에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의 작성’을 추가하는 것임.

[표-13]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 작성 관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 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 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u><신 설></u>	제3조(직무) ----- ----- ----- 7. 「국가재정법」 제86조의2에 따 른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의 작성

개정안은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의 활용 방안 등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78호)⁵⁰⁾의 의결을 전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를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심사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⁵¹⁾

50) 「국가재정법 개정안」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6조의2(재정사업의 영기준검토) ①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별 지속추진여부 등을 결정한다.

②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의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작성한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1)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직무에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 작성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및 인력 확충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 부 칙

각 개정안들은 202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일부 조항에 대한 적용례 규정을 두고 있음. 법 시행 시기는 논의를 통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표-14] 「국회법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총량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6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결산위원회”로 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및 제51조의2제2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예산결산위원회”로 한다.

③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1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결산위원회”로 한다.

④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한다.

[표-15]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 부칙

이 법은 202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회법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재정총량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83조의3)에 한해 법이 시행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① 예산 관련 법률안의 재정총량 내 처리(안 제83조의2제1항)나 ② 하향식 예산심사 제도(안 제84조제2항 및 제6항)

도입 등은 안 제83조의3의 개정 여부에 연동되는 사항이므로, 이들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시점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5
